

14. 보안관리계획 지원 신청

01 | 신청대상과 법적근거

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	-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신고제조자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·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, 동 권고에 따라 신고제조자가 보안관리계획을 작성·제출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. - 신청서 제출처 : 산업통상부
보안관리계획의 내용	-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- 생물작용제등의 보관시설 및 운반에 관한 사항 -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- 외부출입자의 확인 등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보안관리계획 지원 기준	-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 -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참여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
보안관리계획 지원 범위	-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 -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

※ 한국바이오협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위탁기관임



14. 보안관리계획 지원 신청

02 | 신청 방법(서식 작성 요령)

2.1 (온라인)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

1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<https://batims.or.kr/login>

2 “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하기” 클릭

3 신청서 작성

① 담당자 정보 - 자동 생성

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biocompany님 | 공지사항 | 내 정보 관리 | 로그아웃

최근신고 수입허가관리 보유신고관리 제조신고관리 폐기(양도)신고관리 정기(수시)검사 자가점검

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

신고서 작성 신고서 업로드 접수대기 검토중 신고 완료

• 담당자 정보

아이디	biocompany		
성명	김철수		
직위	과장		
휴대전화	010-1234-5678	전화	031-123-4567
이메일	000@0000.co.kr	팩스	
소속기관	바이오기업	소속부서	관리팀
조직구분	기업	담당자구분	관리책임자

② 신청인 정보 - 자동 생성

• 접수번호

접수번호	접수일	제출일자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-	-----

• 신청인 정보

상호(명칭)	바이오기업
성명(대표자)	홍길동
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123-45-67890
주소	(13488)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(삼평동) 1층 바이오기업
전화번호	031-123-4567

14. 보안관리계획 지원 신청

③ 신청내용 기입 및 첨부서류 업로드

• 신청내용

제조신고번호	제조신고 20XX-000 제조신고 확인증에 입력된 번호
제조소재지	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(삼평동) 1층 바이오기업
첨부서류	1.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)의 신원증명서(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사업자등록증.pdf ⓧ 2. 제조신고 확인증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.pdf ⓧ 3.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확인서(確約書)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경영책임자 확인서(시설 장치 설치).pdf ⓧ 4.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확인서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경영책임자 확인서(교육).pdf ⓧ

④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- “동의” 또는 “미동의”

•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	☒ 동의 ☐ 미동의
신고일	2025.12.01
신고인	홍길동

•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	☐ 동의 ☒ 미동의
1. 사업자등록증	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사업자등록증.pdf ⓧ
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법인등기사항증명서.pdf ⓧ
신고일	2025.12.01
신고인	홍길동

⑤ (필요시) 추가 입력 사항

• 추가 입력 사항

메모	
기타 첨부자료	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

⑥ 신청서 생성 클릭

4 신청서 업로드

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biocompany님 | 공지사항 | 내 정보 관리 | 로그아웃

최근신고 수입허가관리 보유신고관리 제조신고관리 폐기(양도)신고관리 **정기(수시)검사** 자가점검

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 - 바이오기업 바이오기업

신청서 작성 **신청서 업로드** 접수대기 검토중 신청 완료

• 직인 날인한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 업로드

Step 01
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 파일 다운로드

①

다운로드 후 직인 날인하여 업로드해 주세요

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직인 날인 후 이미지 파일 또는 pdf파일로 업로드 해 주세요.

③

Step 02
직인 날인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 업로드

②

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

바이오기업-보안관리계획+지원신청+확인증.pdf

- ① 신청서 생성 후 파일을 다운로드 후 대표자 직인 날인 및 스캔
- ②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
- ③ 접수요청 클릭

※ 수정이 필요한 한 경우에는 “신고서 업로드”의 하단에 수정 클릭

14. 보안관리계획 지원 신청

2.2 (오프라인) 산업통상부 방문접수

-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에 방문접수

■ 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신청인	상호(명칭) 바이오기업		
	성명(대표자) 홍길동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(삼평동) 1층 바이오기업	전화번호	
제 조 소 재 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(삼평동) 1층 바이오기업			
신고번호 제조신고 20XX-000			
「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.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 산업통상부장관 귀하			
첨부서류	1.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)의 신원증명서(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1부 2. 제조신고 확인증 1부 3.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확인서(確約書) 1부 4.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확인서 1부		수수료 없 음
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 신청인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			
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→ 접 수 → 검 토 → 지원 여부 결정 신청인 처리기관 : 산업통상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			

2.3 (첨부서류)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

※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 서식의 첨부서류	
첨부서류	• <u>신고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)의 신원증명서(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1부</u> ▶ 현재 신원증명서는 직접 제출할 수 없으므로 한시적으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여 제출
	• <u>제조신고 확인증 1부</u> ▶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
	• <u>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활약서(確約書) 1부</u>
	• <u>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활약서 1부</u>
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	•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일 경우)를 직접 확인 ▶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발급일 3개월 이내) 원본 1부 첨부

03 | 「생화학무기법」 법령

「생화학무기법」

[법률 제21065호]

제6조의2(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)

-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(이하 “신고제조사”라 한다)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·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,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

14. 보안관리계획 지원 신청

제6조의3(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)

-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·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기준·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(권한의 위임 등)

-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무기·생물무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1. 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
 2.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
 3. 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
-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

「생화학무기법 시행령」

[대통령령 제35803호]

제6조의3(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)

-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·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자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1.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
 2.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
-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(確約)할 것
 2.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「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」

[산업통상부령 제1호]

제2조의3(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)

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(이하 “보안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
2. 생물작용제등의 보관시설 및 운반에 관한 사항
3.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
4. 외부출입자의 확인 등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2조의4(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)

①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)의 신원증명서(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2. 제조신고 확인증
3.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협약서(確約書)
4.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협약서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)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